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⑨ - 석조여래입상(石造如來立像)

어룡1리 산 19번지 고려중기에 조성된 석불

석축 상면 150평 대지는 석불과 관련된 사찰부지 추정



최 중 규 포천명유외 회장

-지정번호: 유형문화재 제150호 -지정년월일: 1995.8.7 -소재지: 포천시 어룡1리 산 19번지 -시대: 고려 중기 -규모: 지상 254cm(무릎이하 제외)X122cm -재료: 철분석인 화강암

왕방산의 남쪽 기슭에 위치한 남동향의 사지(寺址)에 건립되어 있다. 석불은 4mX1.6m, 높이 70cm의 규모가 4칸위에 세워져

있는데, 아무런 조각이 없는 주형 거신광배(卍形巨身光背)와 신체 가 하나의 돌로 조성되어 있다.

소발(素髮)의 두정(頭頂) 큼직한 육계(肉)가 표현되었는데, 머리에 비해 높고 큰 편이다. 상호는 역삼각형으로 이마에는 백호가 표현되었고, 깊게 패인 눈썹으로부터 내려오는 코는 얼굴에 비해 큰 편이고, 눈은 가는 음각선으로 처리하였다. 두툼한 입술의 상면에는 인공이 표현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양 뺨의 살이 빠져 광대뼈가 나오고 주걱턱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귀는 깃털이 길게 드리워져 양 어깨에 닿을 듯하다.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어 있다.

법외는 통형으로 배의 하단에 표현된 U자형의 의문이 유려하게 흐르고 있고, 양 소매에서 내려온 의문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수인은 오른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으로 내장하였고, 왼손은 여원인(與願印)의 형태로 외장하였

다. 발목부분부터는 매몰되어 있어 정확한 형상을 파악할 수 없다.

석불의 주변에는 약 60평 정도의 대지가 있고, 주변에 공양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최근에도 공양을 드렸음을 알 수 있는데, 인적이 드문 산간에 위치한 관계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이 석불은 전체적으로 보아 얼굴에 살이 빠지고, 양손의 길이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고, 의문의 처리가 소략한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불의 남쪽에는 길이 10m, 높이 1.1m의 석축 상면에 약 150평 규모의 대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사찰이 있었어



고려 중기에 조성된 석조여래입상.

특별기획 ●●●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⑫

미국과 독일의 경찰제도

미국에 있어서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 마약·정치·화이트칼라범죄(White collar crime)와 같은 극히 일부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기소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권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주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에 넘긴 후야 비로소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중죄사건의 경우 검사는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유지도 하게 된다. 연방검사는 소추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연방검찰에 소속된 연방수사관 등에 소속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검사는 주체적임의 범죄 및 보통법(Common law)상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와 수사의 부가부의 관계 때문에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사가 검사의 주된 임무라기 보다는 공소의 준비행위라고 볼 수 있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소기관으로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을 혐의여부, 증거판단후 영장청구 및 기소유지의 결정을 내려 공소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수사제도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범죄수사의 권한을 가지며, 검사는 조직범죄와 같은 일부 특수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송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그리고 각주의 특수한 범죄에 따라 역할·지휘·권한·관계 등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공통적인 것은 어느 주에서나 수사의 주체 및 수사개시권을 경찰이 보유하고,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와 경찰은 상호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지만 법률적 의견을 구하거나 어려운 사건에 있어 증거를 검토 받거나 공소제기를 위한 경우 검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는 피의자 신빙확보 절차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경찰만이 범죄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체포는 경찰만이 할 수 있다. 체포장의 청구는 법률상 제한이 없고 경찰관도 직접 청구자의 발부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와 영장이 없는 체포 두 가지가 있다. 장기 1년 이상 징역형의 범죄는 면전 또는 개인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는 체포를 인정하고 있고, 범죄는 경찰의 면전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는 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후 합당한 의의의 여지가 없는 정도까지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부에 등재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때부터 검사가 구금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인판사에게 신빙과 함께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러한 절차가 24~48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법경찰이 사전 발령사부터 검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경찰과 검사는 상호 의견교환·자문의 대응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1949년 독일기본법에서 지방경찰행정권을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도록 하여 주현법에 따라 州 단위로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전후 수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채택하면서 검찰조직도 과거의 국가경찰체에서 연방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여 국가(연방) 경찰이 지방경찰을 지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따라서 연방경찰은 주경찰의 상급기관이 아니다.

독일의 수사체계는 전통적으로 규문주의 수사관에 입각하여 검사에게 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검사의 지휘·감독아래서 수사를 행하는 검사의 보조기관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법무부 소속의 수사관을 검찰청에 배치하여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검사는 소추기관이자 법사 수사의 주체자로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손발 없는 머리'(Kopf ohne Hände)로서 참여서기·검찰수사관과 같은 자체 집행기관이 없고 사법경찰관 체임요구권이 나 경찰구수장소감찰권과 같은 권한도 없으며, 자체 감청기관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검사는 대다수 경찰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따로 받지 않고,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의 기소편의주의와는 다르다. 또한 검사에게 객관적부를 부여하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검사는 진실과 정의의 발견을 사명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의미에서 법률의 감시자로서 기능하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검사는 진실과 정의의 발견을 사명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의미에서 법률의 감시자로서 기능하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검사는 진실과 정의의 발견을 사명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의미에서 법률의 감시자로서 기능하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이른바 '손발 없는 머리'(Kopf ohne Hände)로서 참여서기·검찰수사관과 같은 자체 집행기관이 없고 사법경찰관 체임요구권이 나 경찰구수장소감찰권과 같은 권한도 없으며, 자체 감청기관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독일의 검찰은 법률감시자로서 법원과 경찰의 자의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며, 범죄인에 대한 형사소추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상징하는 법치국가원칙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검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검찰은 스스로 또는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를 행하게 할 수 있고, 검사의 이러한 촉탁 및 위임에 대하여 경찰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의 권한과 의무가 있고, 경찰은 사건 처리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등 양자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다. (다음호에 계속)



노 영 민 포천경찰서

체포권·감식처분권·신원확인권이 있으며, 임의수사로서 일반경찰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권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검찰에 수사절차의 주체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검사는 수사활동에 있어 경찰에 일반적 또는 개별적 수사절차를 지휘할 수 있으며, 경찰의 수사활동에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독일의 검사는 소추기관이자 법사 수사의 주체자로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손발 없는 머리'(Kopf ohne Hände)로서 참여서기·검찰수사관과 같은 자체 집행기관이 없고 사법경찰관 체임요구권이 나 경찰구수장소감찰권과 같은 권한도 없으며, 자체 감청기관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검사는 대다수 경찰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따로 받지 않고,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의 기소편의주의와는 다르다. 또한 검사에게 객관적부를 부여하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검사는 진실과 정의의 발견을 사명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의미에서 법률의 감시자로서 기능하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검사는 진실과 정의의 발견을 사명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의미에서 법률의 감시자로서 기능하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이른바 '손발 없는 머리'(Kopf ohne Hände)로서 참여서기·검찰수사관과 같은 자체 집행기관이 없고 사법경찰관 체임요구권이 나 경찰구수장소감찰권과 같은 권한도 없으며, 자체 감청기관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독일의 검찰은 법률감시자로서 법원과 경찰의 자의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며, 범죄인에 대한 형사소추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상징하는 법치국가원칙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검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검찰은 스스로 또는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를 행하게 할 수 있고, 검사의 이러한 촉탁 및 위임에 대하여 경찰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의 권한과 의무가 있고, 경찰은 사건 처리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등 양자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다. (다음호에 계속)

그러나 이른바 '손발 없는 머리'(Kopf ohne Hände)로서 참여서기·검찰수사관과 같은 자체 집행기관이 없고 사법경찰관 체임요구권이 나 경찰구수장소감찰권과 같은 권한도 없으며, 자체 감청기관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독일의 검찰은 법률감시자로서 법원과 경찰의 자의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며, 범죄인에 대한 형사소추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상징하는 법치국가원칙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검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검찰은 스스로 또는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를 행하게 할 수 있고, 검사의 이러한 촉탁 및 위임에 대하여 경찰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의 권한과 의무가 있고, 경찰은 사건 처리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등 양자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정보기관을 두고 있다. 언제부터 국가차원의 정보기관을 두기 시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오래 전부터 인식해 온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6세기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인물이었던 손자(孫子)는 국가가 의적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명한 병법사이자 스파이교본인 '손자병법'에서 이를

연전연승할 수 있었다. 국가 간의 대규모 전쟁이 줄어들게 된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은 군사력보다는 오히려 경제력이나 과학 기술력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즉,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하여 정보기관의 활동목표도 전통적인 국가안보 외에 경제정보, 과학기술정보 그리고 산업보안활동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예방하는 데에는 상당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는 예방정보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조치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정보활동이 성공하여 안정된 사회가 지속되면 위기의식이 점차 희석되고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마치 소방당국의 예방점검 활동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귀찮게 여기다가 불이 난 후에야 소방관의 고마움을 느끼는 것처럼, 미국은 9711테러 이후 정보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했다. 미국 정보기구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통합되지 못하고 분산된 정보기관에 의해 정보



권 순 호 경기도지역신문협회 회장

생각해보면 우리의 경우에도 극복하여야 할 당면과제는 너무도 많다. 우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하여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강대국에 둘러싸인 주변 안보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닥쳐올 남북통일에 대한 대비 등 중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이러한 중요한 과제에 대해 자신과는 별로 관계없는 일로서 시간이 가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천적 사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과 같은 경쟁정국을 이룩한 것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결과인 것처럼 앞으로 닥칠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매끄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정보기관의 개편 문제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중대한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람직한 정보기관의 모습

밝히고 있다. 그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 하여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용간(用間)' 편에서 구체적인 인간 정보 운용기술을 언급하고 있다.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의 정

그러나 정보기관의 제1차적인 임무는 역시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는 마치 생명과 같은 것으로서 안보가 불안하게 되면 경제이든 문화이든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냉전종식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세계는 준비를 사각하고 정보기관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은 1990년대에 2,900억 달러였는데, 1997년에는 2,430억 달러 수준까지 삭감되었다가 9711테러 이후에야 1990년도 수준을 넘어 세계 되었다. 또한, 정보기구와 정보예산도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면 이것은 결국 국가적 재앙을 예방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9711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정보활동의 형태

공통체(Intelligence Community)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정보보통체의 장을 겸임하고 있는 CIA 부장은 고유한 정보수집·분석·회합에도 관계기관 업무조정 회의에 참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운 '정보개혁법(Intelligence Reform Act)'에서는 방만한 테러대응을 위한 통합된 '국가테러대응센터'를 신설하는 외에 모든 정보기관의 활동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국가정보장관(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DNI)을 두도록 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기관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포장산업 선도하는 기업

비닐쇼핑백, 종이쇼핑백, 각종 비닐포장재 전문생산업체 대봉매리트



- 1983년 서울특별시 설립
- 1985년 서울특별시 대봉동 19번지
- 1990년 서울특별시 대봉동 19번지
- 1994년 대봉매리트 설립 (서울특별시 대봉동 19번지)
- 1996년 서울특별시 대봉동 19번지
- 1999년 서울특별시 대봉동 19번지
- 1999년 서울특별시 대봉동 19번지
- 2000년 서울특별시 대봉동 19번지
- 2004년 농업 하나로 쇼핑백 납품개시
- 2007년 대봉매리트 대리점 OPEN
- 2008년 대봉매리트 대리점 OPEN

포장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대봉매리트는 기획에서 디자인, 인쇄, 가공, 완제품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원라인으로 처리하여 귀사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품위있게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비닐 쇼핑백



비닐 제품



공장·사무실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611-4
Tel. 031)544-0051
Fax. 031)544-0052

대표: 임 대 섭